

## 당비납부 총액영수증(세액 및 소득공제용)

당원번 호

01561999

성명

남상규

주민등록번 호

700315-1036430

주소

(135-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50번지 우정에쉐

르 302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5445-9337

총납입금액: 일금 일십이만 원정 (120,000 원)

순번	납입연월	당비구분	금액	납부방법	비고
1	2016년 01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2	2016년 02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3	2016년 03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4	2016년 04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5	2016년 05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6	2016년 06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7	2016년 07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8	2016년 08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9	2016년 09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10	2016년 10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11	2016년 11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12	2016년 12월	일반당비	10,000원	휴대폰	KTF
	합계		120,000원		
01 01 1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별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까지는 ※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비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영수증 발행연월일: 2017년 1월 20일

## 더불어민주당대표



고유번호 : 107-82-122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 대표번호 : 1577-7667

본 영수증은 인터넷으로 발급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본 대조를 발급번호로 원본문서를 확인 또는 영수증 하단의 바코드로 영수증 내용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 영수증 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고객명	남 상 규	주민등록번호	
주소			

방문일	구매내역	카드금액	현금매출영수증 발행금액	현금금액			
16.02.27	3시력교정용 안경테및 안경렌즈	545,000	0	0			
	합계금액	545,000	0	0			
	총합계금액	545,000					

■ 소득세법시행령 제 110조 제 1항 제 4호 및 제 5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의료비(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포함)를 위와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6-31-57861 아이네트 성수점 황의현





발행일: 2017-01-19

■ 의료비 소득공제관련 세법안내

의료비 공제대상(소득제법시행령 제 110조 제 1항 제 4호 제 5호)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 렌즈 포함)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유의 및 안내사항

상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 번호			_ =	! 로 소 득 원 ! 로 소 득 기 득자보관용미!	이 급 명	세 서		)		거주구분 너주지국	7	어주자가 / 비거주자2 어주지국코드   대국인가 / 외국인9 여1 / (부2 ) 국적코드   세대주 1, / 세대원 2		
	수	<ul><li>(1) 법인명(상호)</li><li>(3) 사업자등록번호</li></ul>					-	) 대표자( <del>:</del> ) 주민(법:		호	연말정산구분	)	Mar + 1, / 元豆豆♪ 2		
	무사	(5) 소재지(주소) (6) 성명	남성						주민등록번호 700315-1036						
-112	7 //	(8) 주소	서울	를 강남구	P 대치동 영동대	H로 85길 17	7 (대치동,	우정에쉐	르)		Parties and the second second				
		구분		<u> </u>	주(현)	종(	(전)		종(전)		(16-1)납세조	합	합계		
	_	무처명													
ï		사업자등록번호													
- 1		근무기간 		2016.0	1.01~2016.05.31		~		~		~		~		
무		<b>악면기간</b>		-	~		~		~		~		~		
처	(13)			-	39,613,530			0		0		0			
별 소	(14) (			-	9,093,040			0		0			9,093,040		
나 등		인정상여 4.조사메스 (네핑크웨)	10101	-	0			0		0			0		
평		1주식매수선택권행사			0			0					0		
세		2우리사주조합인출금 3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2		-	0			0		_			0		
	(15)-3			$\vdash$									0		
	(16)			┼──	48,706,570			0		0		0	48,706,570		
			M01	_	40,700,370			0		_		0	0		
	(18)국외근로 M( (18)-1야간근로수당 O(			-	0			0					0		
11	(18)-2출산보육수당 Q(			<del>                                     </del>	0	_		0					0		
비과		의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	T01	<del>                                     </del>	0			0		$\neg$			0		
세		S소기업취업청년감면	T10		0								0		
및	(18)-				0										
감 면	(18)-				0						***************************************				
	(18)-	7			0										
득	(18)-	8 ~ (18)-25													
평 ≡	(19)														
세	(20) t	비과세소득 계			0			0		0			0		
	(20)-	1 감면소득 계			0			0		0	*1		0		
			Ŧ	그 분			(80	))소득세		(81)지방소득세			(82)농어촌특별세		
500.000	(74)길	결정세액						3,073	,935		307,393		0		
세		(75)종(전)근무지	] ,	사업자					0		0		0		
액	기납	E222222 1-1000004		등록					0		0		0		
명	세악			번호					0		0		0		
세	/\	(76)주(현)근무지						5,729			572,920		0		
		남부특례세액 						0.055	0	_	005 500		0		
	(78) X	· 감징수세액	-					-2,655	,540		-265,520		0		
					2	선징수액(근 <u>5</u> 2017 년	01 월	영수(지급 16 일	)합니다.						
						징수(보고)의	의무자				(서명 또	는 인	)		
			세무	서장 귀형	ōŀ										

(제2쪽)[ 95943003 ]

	(건)총급	(1 <b>6</b> ),디	만외국인단	난일세율적	용시에는연긴	·근로소=	=)	48,706,57	0 (50	0) 졷	등합소	득 과세	표준			32,092,902			
	(22) =	-로소=	공제					12,185,32		1) 신	불세	애				3,733,935			
	(23) =	-로소=			36,521,24	_													
		기 본	(24) 본 (			1,500,00	0		(52)	「소득서	네법 <sub>」</sub>			0					
		고	(25) 배의						0										
		제	A	양가족((				_	-	세	(53)「조세특례제한법			법」((54)제외)	)	0			
		추		로우대((					_	액 감									
	r	가	(28) 상( (29) 부l	개인(0명	<b>შ)</b>		~		(54)	「조세특	특례제한법	법」 제30조		0					
		공 제							0		/EE\	조세조:	Oł.						
		All	(30) 한부모가족					947,25	7			세액감				0			
	-	연기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가) 공무원연금					10 1100 P. C.	0	-		근로소				660,000			
	종	ᄞᄱᆈᄳᄖᄱᆓ	(22) 공적	(나) 군(					0		(01)			공제대상자년	려( 0명)	0			
		明刊	연금 보험료		 님학교교직:	원연금			0		(58)	자녀		6세 이하( 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0			
	하	제	공제	(라)별정우체국연금					0					출산.입양자(	0명)	0			
			(33)	(가)건강.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1,664,50	0			(59)과학기술인		V = TI	공제대상금액	0			
	소		보험료	(나)고된	)고용보험료			316,59	0		~	(59)1	바악기울(	건공세	세액공제액	0			
				(가) 주택		대출기	관	Y	0		연 금	(60)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에	공제대상금액	0			
	득			차입금원 상환액	원리금	거주지	ł		0		계 자	따른토	J직연금		세액공제액	0			
	· 공 제				2011년	15년 (	기만		0	좌	ы	(61)0	변금저축		공제대상금액	0			
		특별 소 득 공 제					이전	15년~	-29년		0			(01)2	2014		세액공제액	0	
				(51) 71 71	차입분	30년0								HTL	공제대상금액	0			
IV			(34)		2012년 이후 차	고정금 출	l리·비거치 상환 대	ý					보장성		세액공제액	0			
정			주택 자금	(다)장기 주택저	입분(15 년이상)		 의 대출	1				(62)5	브험료	장애인전용	공제대상금액	0			
산 명				금이자	당차입 금이자 상환액	금이자	금이자	금이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0					보장성	세액공제액	0
세				생완백	2015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공제대상금액	0			
					이후 차입분		그 밖의 대출		0 세 이 액	(63)의료비			세액공제액	0					
						50000 5000	고정금리이거나								공제대상금액	0			
			(35) 715	부금(이월	L 일부)	년	비거치상환대출	_	골		특 (64)교육비 별			세액공제액		0			
			(36) 계	I D(vie	2 ( )			1,981,09	저	H H	세			10만원	공제대상금액	0			
	(37) 차감소득금액							32,092,90	2		액		(가)정 치	이하	세액공제액	0			
	(38) 개인연금저축										공제		자금 기부금	10만원	공제대상금액	0			
		(39) 소	ː기업·소	상공인공	응제부금						(65)		초과	세액공제액	0				
		(40)주택 (가)청약저축										기	(나)법정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마련저 소득공	- 23	(나)주택	백청약종합 <b></b>	저축		(				부금	(-178 )		세액공제액	0			
	コ	170	All	(다)근로	은자주택마	(						l사주조합기 15년이후기	공제대상금액						
	ш		자조합					(					부금)		세액공제액				
	밖의			등 사용약				(	2				(다)지정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0			
		(43) \	김사수	진합 출연	! 금			(	4			(66)	н		세액공제액	0			
	소	(44) 두	리사주	조합 기부	심(2014년	이전 :	기부분)					-	200	교제		0			
	바 공								1	1	(67) 표준세액공제 (68) 납세조합공제			5 All		0			
	제	(45) ፲	(4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46)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H	(69) 주택차입금					0			
		(46) 돌							1		(70) 외국납부					0			
															공제대상금액	0			
		(47) 진	기십합투	투자증권:	서숙			(	<u>'</u>	(71) 월세액				세액공제액	0				
		(48)	밖의 소	득공제 :	<b>Л</b>			(	)		(72) k	세액공제	<b>Ш</b> Л			660,000			
	(49) 소	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73)	3) 결	정세약	ዛ((51)-	3,073,935						

(68)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O"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저고펜하모						가즈 사도고대 참모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 공	본 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TI =		보험료					신용카9	Ξ 등 사용	음액 공제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 녀 자	한 부 모	장애 인	6세 이하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등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등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기부금
SICKEL C	[적공제항목에 = 이의스를 저스니다		1	0	0	국세청		0	0	0	0	0	0	0	0	0	(
Maort	는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0명)	0	0	0	0	기타	1,981,090	0	0	0	0	0	0		0	0	(
0	700315-1036430	(	C			국세청		0	0	0	0	0	0	0	0	0	(
1	(근로지본인)					기타	1,981,090	0	0	0	0	0	0		0	0	(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				

##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 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9) 근무처명 및 (10)사업자등록번호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대한민국] 기주지국과 가장자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를 선택합니다.
  3.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및 강면소득 명세서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강면대상을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재할 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및 강면소득 명세서란의 비과세소득 계란 및 (20)-1 강면세액 계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라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5.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라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제150조(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라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6.(21)총급여란에는 "(16)계"라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6)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50조에
- 경우에는 "(16)계"의 급득과 미국 경우에는 "(16)계"의 급득과 미국 I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1라과 그 밖의 세액공제에 관한

-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종합소득 특별공제((34)~(39))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43)~(47))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제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34)-1특별공제 종한한도 초과액은(34)보험료((다)),(35)의료비((나)),(36)교육비((나)),(37)주택자금((가)+(나)+(다)),
  (39)기부금((라)지정기부금:2013년 이후 지출분),(44)-1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44)-2주택마련저축 소등공제액((가)+(나)+(다)),(45)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액(2013년 이후 투자・출자분),
  (46)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47)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액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9.(50)종합소득 과세표준은 (42)차감소득금액에서 (49)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49)-1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10.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67)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11.(68) 소득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1 /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1)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1)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1) 3 가)	2	
	배우자 (소법 §50 (1)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50 (1)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1) 3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1) 3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1)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 우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률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 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